

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

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마약류 저장기준

사고마약류의 처리(1) -법제12조

●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

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때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함

1. 재해로 인한 상실 (시군구가 발행한 서류)
2. 분실 또는 도난 (수사기관에 신고한 서류)
3. 변질·부패 또는 파손(증명서류 불필요)

※ 벌칙 : (마약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미복합) / (향정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미복합)

과태료 : (마약) 500만원, (향정,대마)

행정처분 : 취급업무정지 1월(미복합)

사고마약류의 처리(2) -법제12조

● 사고마약류의 폐기

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, 유효기간경과 또는 보관 곤란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고 후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함

※ 벌칙 : (마약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허위보고, 폐기부적절)

(향정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허위보고, 폐기부적절)

과태료 : (마약) 500만원, (향정, 대마) 300만원

행정처분 : 취급업무정지 1월(미보고, 임의 폐기)

마약류의 저장(1) -법제15조

-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
- 취급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함
-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
- 파손이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
- 잠금장치

마 약 :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

향정신성의약품 : 잠금장치가 설치된 금속함

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조직범죄단속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처단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

마약류의 저장(2) -법제15조

- 대마 :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·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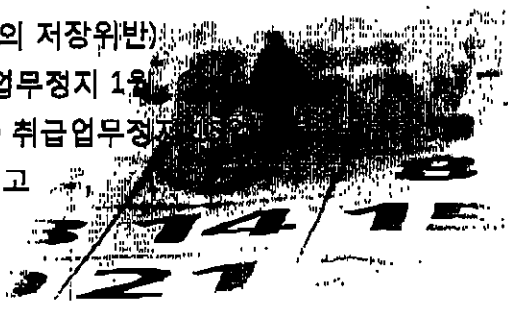
※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마약)

과태료 : 300만원 (향정의 저장위반)

행정처분 : (마약) 취급업무정지 1월

(향정 1-3군) 취급업무정지 15일

(향정4군) 경고



마약류의 저장(3) -법제15조

- 잔여, 반품, 파손, 유효기간 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도 규정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함

- 냉장, 냉동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

- 업무시간 중 조제 목적으로 조제대에 비치하는 등 안전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함

- 마약류 저장 금고 안에 일반의약품은 함께 보관하지 않음



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-법제38조

-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·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·향정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준수
- 마약류취급자는 변질·부패·오염·파손·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
 - ※ 벌칙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
 - 행정처분: 취급업무정지 1월
- 마약류취급자는 도난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준수한다
 - ※ 행정처분: 경고